

#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창열 의원)

의안 번호	34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: 2022년 09월 28일

발 의 자 이창열의원

찬 성 자 김성기, 이은미, 김광성의원

## 1. 제안이유

조례안은 청년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초고령 사회의 우리군 인구 구조의 특성을 반영하며,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청년농업인의 나이를 현행 45세에서 49세로 상향 조정(안제2조 관련)

나. 지원사업에 컴퓨터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관련 6호, 7호를 추가(안제5조 관련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청년기본법」,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)

다. 입법예고 : 2022. 09. 07. ~ 2022. 09. 27.(20일간), 의견 없음.

라. 집행기관의견수렴 : 2022. 09. 01.~ 2022. 09. 06. 의견 없음.

##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나목 중 “**두고**”를 “**두고 실제**”로, “**45세**”를 “**49세**”로 한다.

제5조제6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브랜드 개발, 홈페이지 제작 및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
7.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  략)</p> <p>2. “청년농업인”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가. (생   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나.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</p> <p>3. (생   략)</p> <p>제5조(지원사업)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   략)</p> <p>&lt;신   설&gt;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&lt;신   설&gt;</p> <p>6. (생   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나. ----- ----- <u>두고 실제</u> ----- ----- <u>49세</u>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지원사업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브랜드 개발, 홈페이지 제작 및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</u></p> <p>7. <u>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</u></p> <p>8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p>

## [관련법령]

### 청년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년”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.

###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제6조(정책 수립·시행의 기본원칙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,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에는 지역공동체의 유지, 해당 지역의 농업·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

# 비용추계서 (제3조제1항 관련)

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조례안 제2조(청년농업인 연령범위 상향조정)
- 조례안 제5조 제6호,제7호 신설(브랜드 및 홈페이지 제작 등 S/W지원사업)

## 2. 비용 추계결과

### 가. 추계의 전제

- 조례 개정 후 65,000천원 추가발생비용 예상
  - ('22년 개정 전) 415,000천원 → ('23년 개정 후) 480,000천원

### 나. 추계 결과

- 청년농 연령범위 상향 조정으로 대상자 및 사업량 확대
  - 사업명 :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사업
  - 자체수입 : (개정 전) 10농가 \* 41,500천원 = 415,000천원  
(개정 후) 20농가 \* 24,000천원 = 480,000천원
- ※ 청년농업인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- (45세 기준)392농가 → (49세 기준)754농가
- : 농가 수 증가에 따라 사업량 · 단가 조정 후, 점진적 사업비 확대 할 계획

### 다. 자원조달 방안

- 자체수입

## 3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장 이용하
연락처	(033) 330 - 1306

